

환경법규

환경부 공고 제2014-627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4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공장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 현장소음도 조사, 외국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5dB 완화(별표5 제1호 가목)

- 1) 현행(낮 50dB, 저녁 45dB, 밤 40dB) ⇒ 개정(낮 55dB, 저녁 50dB, 밤 45dB)
- 2) 다만, 공장인근(200m이내)에 정온시설(전용주거지역 · 취락지구 등)이 위치한 경우 현행 “가목”의 기준(낮 50dB, 저녁 45dB, 밤 40dB) 적용

나. 작업시간 단축시 부여하던 보정치를 세분화, 75% 구간에 대해 3dB 보정 추가(별표5 비고5호)

작업시간	12.5% 미만	12.5~25% 미만	25~50%미만	50~75% 미만(신설)
보정치	+15dB	+10dB	+5dB	+3dB

* 기준시간대: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

다. “비고”란에 산재된 일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을 “본문 표”로 일원화

- 1)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등(별표5 비고6호 나목→별표5 가목 제4)호)
- 2) 산업단지(별표5 비고6호→별표5 마목 제2)호)

라.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5대 유형(목적)별로 명확히 구분(별표5)

- 1) 주거환경의 특별관리, 주거환경의 일반관리, 농림수산업적 생산, 상업적 용도, 공업적 용도로 목적을 명시

환경부공고 제2014-6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4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1. 제안이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설치허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 또한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변경(안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 제2항 제3호, 제3항제1호)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합리화함.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시설 변경(안 제32조제3호·제4호)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및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의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규정함.